



사장님~ 청년 채용하셨어요? 잊지 말고 지원금 신청 하세요!


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

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**취업애로청년**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 사업주
+ 일부 기업은 5인 미만도 지원 가능

☞ 취업애로청년은?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, 대학 졸업 후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, 고졸 청년 등

지원대상기업과
취업애로청년
요건은 운영기관에
꼭 미리 확인하세요!

지원수준 1인당 매월 최대 80만 원, 최장 1년간 960만 원 한도, 기업당 최대 30명 지원(특별한 경우 60명까지 가능)

지원요건 ☑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
☑ 주 30시간 이상 근로, 최저임금 이상 지급, 고용보험 가입 등

신청방법 ① 사업 누리집(www.work.go.kr/youthjob) ▶ 회사근처 운영기관 검색 ▶ 원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참여신청
② 참여승인 받은 후 청년 채용 +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, 참여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채용자까지 지원
③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지원금 신청

다른 지원금은 없나요?



‘청년채용특별장려금’도 있어요!

지원대상 2021년 10월 2일 ~ 2021년 12월 31일에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
5인 이상 중소·중견기업 사업주(22년 7월 신청가능 기준) + 일부 기업은 5인 미만도 지원 가능

지원수준 1인당 매월 최대 75만 원, 최장 1년간 900만 원 한도, 기업당 최대 3명 지원

지원요건 ☑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
☑ 청년을 채용한 이후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(전년 연평균 대비)
☑ 주 30시간 이상 근로, 최저임금 이상 지급, 고용보험 가입 등

신청시기 채용 후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3개월 이내

☞ **알아두세요!** 지원금 신청기간이 지나면 지원이 안돼요.

청년 채용 시점	참여 가능 시점(1회차 지원기준)
'21.10.2 ~ '21.11.1.	'22.5.1 ~ '22.7.31.
'21.11.2 ~ '21.12.1.	'22.6.1 ~ '22.8.31.
'21.12.2 ~ '21.12.31.	'22.7.1 ~ '22.9.30.

지원금 신청기간
놓치지 말고 꼭!
확인해 보세요~

신청 문의 고용보험 누리집(www.ei.go.kr) 또는 고객상담센터(국번없이 1350)



‘지원금 찾아주기 서비스’를 아시나요?

기업별로 장려금을 지원받은 청년의 지원이력을 조회할 수 있어요.
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활용해보세요.

대상사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,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참여 사업장

내 용 지원대상 청년별로 과거의 지원이력(연월, 금액 등)

조회방법 ① 고용보험 누리집(www.ei.go.kr) 접속
② 기업로그인 ▶ 기업서비스 ▶ 조회 ▶ 지원금 지급내역(개인별) 조회
※ 참고 :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지원기간이 만료되었어도 최대 3년 이내에는 지원금 신청 가능

신 청 누락된 지원금이 있으면 즉시 고용보험 누리집(www.ei.go.kr)
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신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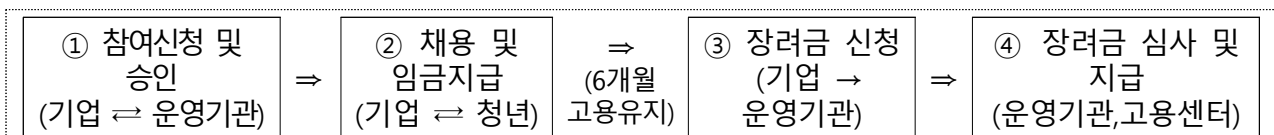
문 의 고객상담센터(국번없이 1350)



붙임 2
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요

- (개요)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월 최대 80만원, 최장 1년간 지원
- (지원대상)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취업애로청년
 - (기업)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*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
 - * 성장유망업종, 지식서비스·문화콘텐츠·신재생에너지 산업, 청년창업기업, 미래유망기업, 지역주력산업,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,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
 - (취업애로청년)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~34세 청년
 - * 단, 채용일 기준 **고졸 이하 학력(졸업예정자 포함)**, 고용촉진장려금 대상,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,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, 보호종료아동, 폐자영업자,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(대학 졸업예정자 포함) 등은 실업기간이 **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**
- (지원내용)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, 최장 12개월 지원
- (지원요건)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,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, 고용보험 가입 등
- (지원한도)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%(비수도권 지역은 100%)까지 지원 ⇒ 최대 30명까지 지원,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60명까지도 가능
- (참여방법) 사업 누리집(www.work.go.kr/youthjob)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
 - * 온라인 참여신청·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,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, 참여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채용자까지만 지원
 - ** 자세한 내용은 사업 누리집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국번없이 1350)
- (지원절차) 사전 참여 신청 후 청년 채용, 6개월 후 장려금 지급



붙임 3

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 개요

- ☐ (개요)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5인 이상 중소·중견기업에 월 최대 75원씩 최장 1년간 지원(최대 900만원)
- ☐ (지원대상) 청년(만15세~34세)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·중견기업
 - * 성장유망업종,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이라도 지원가능하며, 사행·유흥업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
- ☐ (지원내용) 청년 1명당 월 최대 75만원을 최장 1년간 지원(최대 900만원)
- ☐ (지원요건)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
 - ① (청년 정규직 신규채용) '20년 12월~'21년 12월까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
 - ② (기업 근로자수 증가) 기업이 청년을 채용한 후 기업의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(전년 연평균 대비)해야 함
 - ③ (신청기한 준수) 채용 후 최소고용유지기간(6개월)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
 - * 同 보도자료 배포일('22.7.1.) 기준으로 '21.10.2. 이후 채용자부터 신청 가능
- ☐ (지원한도) 기업당 최대 3명
- ☐ (참여방법) 고용보험 누리집(www.ei.go.kr)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접수(우편, 방문)
 - 청년을 채용한 이후 매 6개월 단위로 총 2회 신청
 - * 장려금은 월별 전체 근로자수 증가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
- ☐ (지원절차)

절차	사업시행 공고		청년 신규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		지원금 신청		지원금 지급 및 사업장 지도·점검 등		사업평가
주체	고용부		사업주		사업주		고용센터		고용부
- ☐ (문의)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국번없이 1350)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

붙임 4

지원금 찾아주기 서비스 안내

- (개요) 청년채용장려금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기업이 그동안 신청한 근로자 개개인별·회차별 지원 이력을 스스로 조회하여 장려금 신청 누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
- (대상사업) 청년추가고용장려금, 청년채용특별장려금
- (조회방법) 고용보험 누리집(www.ei.go.kr)을 방문하여 기업 로그인 한 후 기업서비스 → 조회 → 지원금 지급내역(개인별) 조회



- (확인내용) 지원 대상자 개개인별·회차별 신청연월, 지원대상기간, 지급금액, 지급일, 처리센터, 접수번호 등
- (활용예시) 아래 예시를 참고

- '18.10.1. 청년 甲을 신규 채용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에 최초 참여한 사업장 A에서 청년 甲('22.7.1.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)에 대해 '18.10.1~'19.7.31 기간에 대해 지원을 받았고, '19.1.31. 채용된 청년 乙('20.7.15. 퇴사)에 대해 '19.1.31~'19.5.31. 기간에 대해 지원을 받은 경우
 - (청년 甲) 최대 지원기간(기업당 3년)은 '21.9.30.에 종료되었으나, 소멸시효는 매회 신청 가능한 날로부터 3년이므로 '22.7.1. 기준으로 '19.8월분부터 '21.9월분까지의 지원금 신청이 가능
 - (청년 乙) '22.7.1. 기준 소멸시효가 도래한 '19.6월분은 신청이 불가하나 '19.7월분부터 '20.7.15.까지는 지원금 신청이 가능
- ⇒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청년 甲, 乙에 대해 지원 이력을 조회하여 이미 지원금을 지급받은 기간 및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확인하고 지급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고용보험 누리집(www.ei.go.kr)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신청서 제출

- (문의)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국번없이 1350)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